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 차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39호)

2026.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제정안의 체계	3
2. 총괄적 검토	3
3. 조문별 검토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차지호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2. 3.

다. 회 부 일 : 2026. 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음. 특히 특정인의 얼굴과 성적 이미지를 합성한 ‘디지털 위조물’은 한 번 유포되면 복제와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피해자의 인격권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함.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시조치 제도는 삭제 여부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플랫폼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가 미비하여 확산되는 복제본에 대응하기 역부족임. 또한 국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한계와 성인 대상 딥페이크 처벌의 사각지대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플랫폼사업자의 삭제 의무시한을 명시하고, 국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및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형사 처벌 규정을 정교화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딥페이크, 디지털 위조물 등 용어를 정의하고, 국외에서 수행된 행위라도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성인 피해자의 요청 시 48시간 이내,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인지 즉시 또는 24시간 이내에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을 삭제·차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 및 6조).
- 다. 미성년 대상 성적 합성물에 대해 비동의 추정 원칙을 도입하여 삭제 요건을 완화함(안 제6조).
- 라. 해시값 및 콘텐츠 지문 생성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동일·유사한 복제본을 일괄 차단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일정 규모 이상의 국외 플랫폼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강제하고, 의무 위반시 연대책임을 부여함(안 제8조).
- 바. 플랫폼의 적극적 삭제를 유도하기 위한 면책 규정과 함께, 정보계시자의 방어권을 위한 사후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함(안 제9조).
- 사. 의무 불이행 시 국내 매출액의 1% 이내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10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체계

- 제정안은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제명(題名) 하에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되어 있음.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성인 피해자의 삭제요청)
제5조(성인 피해자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
제6조(미성년 피해자 보호 및 삭제의 특례)
제7조(확산콘텐츠의 삭제 및 기술적 조치)
제8조(신고 절차의 표준화 및 신고센터)
제9조(선의의 조치에 대한 면책)
제10조(벌칙 및 과징금)

2. 총괄적 검토

- 최근 고도로 발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하여 특정인의 얼굴과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여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가짜 콘텐츠로서 ‘디지털 위조물’을 불법적으로 제작·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 특히, 이러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급속도로 복제되고 확산되므로 피해자의 인격권이 회복 불가

능한 수준으로 파괴되는 등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함.

-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통한 임시조치는 권리 침해 피해자가 침해사실을 소명하여야 하고, 삭제 여부는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삭제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초단위로 확산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제정안은 플랫폼사업자에게 삭제 의무시한을 명시하고, 국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및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국내대리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2차 가해의 핵심인 확산 콘텐츠를 차단 하도록 함으로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법체계¹⁾와 제정안 비교>

현 행	제 정 안
제2조제1항제3호(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2조제7호(플랫폼사업자)
제44조의2제1항(정보의 삭제등 요청)	제4조(성인 피해자의 삭제요청)
제44조의2제2항(삭제·임시조치 의무)	제5조(성인 피해자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삭제·차단 등)	제6조(미성년 피해자 보호 및 삭제의 특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기술적·관리적 조치)	제7조(확산콘텐츠의 삭제 및 기술적 조치)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제8조제4항(국내대리인의 지정)
-	제9조(선의의 조치에 대한 면책)
-	제10조(벌칙 및 과징금)

1) 법률명이 없는 조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임.

-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제정안의 취지와 유사한 규정을 둔 기존 법률들이 시행 중임에도, 개정이 아닌 제정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적절한지 총괄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함.
- 딥페이크에 의한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에 대하여 피해 예방 및 삭제 의무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은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나,

제정법 시행으로 인한 법·제도 정비에 따른 입법경제적 비용, 현행 법체계 하에서 이뤄지는 규제와의 중복성, 기존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및 규제 절차에 대한 수범자의 신뢰 또는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한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둘째, 기존의 법체계와의 정합성, 대상의 포괄성 등을 고려하여 정의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2조는 제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두며 10개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 법체계에서 정의된 용어와의 관계도 고려하여야 하고,

주된 수범자가 되는 “플랫폼사업자”,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의 핵심인 “확산 콘텐츠” 등 용어는 의미에 따라서

수범자의 범위가 바뀌거나,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어 자체가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부 포괄하는지도 검토하여야 함.

- 셋째, 제정안의 핵심적 규율 사항인 피해자의 삭제 요청과 그에 따른 플랫폼사업자의 삭제·차단 조치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이뤄지고 있어 중복 입법에 해당할 수 있고, 제정안의 조문 신설에 따라 실효적인 피해자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은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내용과 유사하고, 안 제4조에서 규정한 각 호의 사항을 피해자가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플랫폼사업자의 삭제·차단 의무에 변동이 없는지가 다소 불명확하며, 민간의 플랫폼사업자에게 피해자 스스로 신원 정보, 콘텐츠의 피해자 식별 가능성 및 비동의 여부, 허위 신고 시 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의 신고를 위촉시키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큼.
- 넷째, 해당 규정은 이미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중복 입법으로서 실익이 없거나,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려워서 강제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안 제7조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확산콘텐츠의 일괄 삭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해시값 비교 및 콘텐츠 지문 생성 등 기술적 조치는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이뤄지고 있고, 딥페이크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본질적으로 유사한 확산콘텐츠 일괄 삭

제·차단 의무 부여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함.

- 다섯째, 피해신고센터 설치 규정 신설에 따른 센터 설치 및 운영 역량이 갖추어져있는지, 기존의 대응 체계와 중복되지는 않는지 검토가 필요함.
-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으로 인한 피해 접수 및 지원을 위하여 성범죄 피해자 상담 등 전문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해당 업무에 있어서 창구 이원화 및 중복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여섯째, 벌칙 및 과징금 규정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벌칙 및 과징금에 있어서 현행 법체계상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지,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벌칙 및 과징금 규정과의 중복성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기타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이하 조문별 검토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함.

3. 조문별 검토

가. 정의(안 제2조)

(1) 제정안 요지

-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2) 제정안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딥페이크”란 인공지능기술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조작하거나 합성하여 사실과 다르게 제작된 영상·음성·이미지 및 이에 준하는 정보를 말한다.
2. “성적 이미지 표현물”이란 사람의 성적 부위, 성적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성적 상황을 주된 내용으로 표현한 그림, 사진, 영상, 만화, 아바타·가상인물 및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한 표현물을 말한다.
3. “디지털 위조물”이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기계학습 등 기타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에 존재하지 않거나 실제 상황과 다르게 조작·합성된 성적 이미지 표현물로서, 특정 개인이 식별 가능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4.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이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전송·공개된 다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피해자가 촬영·제작에는 동의하였으나 공개 또는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가. 피해자의 실제 신체를 촬영한 성적 이미지 표현물

- 나. 피해자의 얼굴·신체·음성을 합성·조작하여 제작한 디지털 위조물
5. “성인 피해자”란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의 대상이 된 만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6. “미성년 피해자”란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의 대상이 된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7. “플랫폼사업자”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의 게시·공유·유포를 중개하거나 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삭제요청”이란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플랫폼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9. “확산 콘텐츠”란 특정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을 재게시·반복게시·미러링·편집 또는 추천 알고리즘을 통하여 확산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10. “국내대리인”이란 국외 플랫폼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검토사항

- 통상 입법체계상 정의규정은 해당 법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 사용 빈도가 높은 용어, 다른 용어들을 기술하는 데 있어 토대가 되는 용어 및 일반적 쓰임새와 다르게 사용되는 용어 등의 뜻을 명확히 하여 법률 해석과 적용상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는 기능을 함²⁾.

- 안 제2조는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 표현물’, ‘플랫폼사업자’, ‘삭제요청’, ‘확산 콘텐츠’ 등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제1호부터 제10호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정의 규정은 기존 법체계 하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 빈도가 낮은 등 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입법체계상 수정 내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먼저, 입법취지와 제명을 고려했을 때 딥페이크 용어의 활용을 늘리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딥페이크’는 목적 규정에서 최초 사용된 이후 제2조제1호에서 그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부터의 용어에서 단 한 번도 활용되지 않으면서 제3조부터 제10조에 이르기까지도 사용되지 않고 있어서 다른 용어의 정의 규정에 딥페이크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예컨대, 제3호 ‘디지털 위조물’의 정의를 ‘딥페이크를 활용하여 생성된 성적 이미지 표현물로서, 특정 개인이 식별 가능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수정하거나, ‘성적 이미지 표현물’을 ‘딥페이크영상등’으로 수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입법취지가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임을 고려한다면, 제명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고,

2) ‘법제기준과 실제(2024개정 증보판)’, 국회사무처, 244p

충분한 논의를 거쳐 딥페이크로 인한 성범죄를 포함한 딥페이크에 따른 피해 전반에 대한 규율을 목적으로 할 것이라면 ‘딥페이크’ 용어를 적극 원용하여 규율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임.

○ 둘째, 제정안은 성인과 미성년으로 피해자 연령을 구분하여 별도의 특례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연령 구분에 이용되는 용어 정의에 기존 법률을 원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청소년보호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연령 규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청소년보호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과 같이 타 법률을 원용 내지 인용하는 방식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고, 타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법률 간 괴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정의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3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규정하고 있고, 제2조제9호는 ‘게시판’을 규정하면서 제44조의7은 ‘게시판 관리·운영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새로이 ‘플랫폼사업자’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음³⁾.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9.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영상·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미 플랫폼사업자를 포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플랫폼사업자와 사실상 동의어로 해석되므로, 별도로 ‘플랫폼사업자’라는 용어를 규정함으로써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정보통신망법과 제정안의 용어 비교>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플랫폼 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업무를 제공하는 자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업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관리·운영하는 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의 게시·공유·유포를 중개하거나 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자

- 넷째, ‘삭제요청’의 경우 단순한 용어로 일반적인 쓰임새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정의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별도로 정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여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확산 콘텐츠’의 포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답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플랫폼사업자**”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의 게시·공유·유포를 중개하거나 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최초 게시된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을 재게시·반복게시·미러링·편집 또는 알고리즘을 통하여 확산되는 일체의 정보로 규정함으로써,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최근 온라인 콘텐츠 유통은 SNS를 통한 게시뿐 아니라, 메신저나 클라우드 통한 전송·공유, 파일 공유 플랫폼이나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규정의 포괄성을 확보하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비밀의 자유 등과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 용어 정의 및 역외 규정 명시와 국외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및 딥페이크 피해 방지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공감한다는 입장임.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정법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FAQ)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범죄에 오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조작 영상”이라고 딥페이크를 정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 법률안에서도 “인공지능기술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조작하거나 합성하여 사실

과 다르게 제작되어 범죄에 오용될 수 있는 영상·음성·이미지 및 이에 준하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딥페이크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동 법안은 본래 국가가 수행해야 할 ‘AI 생성물의 사법적 위법성 판단 및 유통 방지 의무’를 민간사업자인 플랫폼에게 부당하게 외주화(outsourcing)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며,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위험이 있고, 해외 입법례와도 상충되므로, 신중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나. 성인 피해자의 삭제 요청 및 삭제·차단 의무(안 제4조 및 제5조)

(1) 제정안 요지

- 성인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플랫폼사업자에게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사업자에게는 접수 사실 통지 의무 및 피해자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함(안 제4조).
- 플랫폼사업자는 삭제요청을 받은 날부터 48시간 이내 삭제 또는 차단 하고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피해자에게 삭제·차단 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원 및 비동의 여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2) 제정안 조문

제4조(성인 피해자의 삭제요청) ① 성인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플랫폼사업자에게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에 대한 삭제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삭제요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자의 성명 등 신원 정보
2. 삭제를 요청하는 콘텐츠의 구체적 위치(서비스명, URL, 게시일, 계정명 등)
3. 해당 콘텐츠가 자신을 식별 가능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자신의 동의 없이 공개되었음을 확인하는 진술
4. 허위 신고 시 형사책임 또는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

다는 진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플랫폼사업자는 삭제요청을 접수하면 지체없이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성인 피해자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 ① 플랫폼사업자는 제4조에 따른 삭제요청을 받은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해당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을 삭제 또는 차단하여야 한다.

② 플랫폼사업자는 삭제·차단이 완료된 후 그 사실 및 조치 범위(원본·복제·재게시 등)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의 이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피해자 신원 확인 및 비동의 여부 확인을 할 수 있다.

(3) 검토사항

○ 제정안은 직접 성인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삭제 의무 시한을 명시함으로써 요청 받은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해당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을 삭제 또는 차단하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

○ 다만,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기존 법체계를 통해서 이미 동일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에 대하여,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는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강화된 보호를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유통방지 조치가 이뤄짐.

○ 수범자인 플랫폼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조치의무사업자⁵⁾에 포함되고, 규율대상인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은 동법의 불법촬영물등에 포함되므로, 이미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참고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⁶⁾이 이미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어 계류 중인데, 해당 개정안은 조치의무사업자가 일단 임시조치를 통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기존 규제 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신속한 권리구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바, 해당 법 개정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둘째, 법문언이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

4)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타인의 권리’라는 목적을 감안하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소정의 ‘불법정보’에 대응하여 소위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로 불리고 있다.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 81p, 이창범·황창근·정필운 공저)

5)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2조제14호가 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의안번호 제2215242호,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는지 검토가 필요함.

- 안 제4조는 삭제요청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조 제3항은 플랫폼사업자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각 호의 사항을 기재·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플랫폼사업자의 삭제·차단 의무에 변동이 없는지가 다소 불명확함.
- 또한, 민간 플랫폼사업자에게 피해자 스스로 신원 정보, 콘텐츠의 피해자 식별 가능성 및 비동의 여부, 허위 신고 시 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의 신고를 위축시키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지 서식]에서는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에서는 기본적인 신원정보 및 콘텐츠의 위치 및 사유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 콘텐츠의 피해자 식별 가능성, 허위 신고 시 책임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오히려 제정안에서 기존보다 피해자에게 많은 사항을 기재하도록 법률 수준에서 강제하고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서 이미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개정하는 방안이 기존 법체계 및 심의 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신속하게 딥페이크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함.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국민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정법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해당 법률안의 경우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 조항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행 법체계에서도 유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율이 이미 다층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별도 제정법 방식의 필요성 및 현행 제도와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유통 금지에 소요되는 각종 집행 비용이나 법적 리스크도 플랫폼에 외부화하여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EU 디지털 서비스법(DSA), 프랑스 및 독일 등 해외 주요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기간의 고정된 삭제 시한 법정화 등 플랫폼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

다. 확산콘텐츠의 삭제 및 기술적 조치(안 제7조)

(1) 제정안 요지

- 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삭제 또는 차단된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확산콘텐츠에 대한 일괄 삭제 또는 차단 및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여함(안 제7조).

(2) 제정안 조문

제7조(확산콘텐츠의 삭제 및 기술적 조치) ① 플랫폼사업자는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삭제 또는 차단된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확산콘텐츠에 대하여도 일괄적으로 삭제 또는 차단하여야 한다.

② 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해시값 비교, 콘텐츠 지문 생성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망법은 삭제요청 받은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나 임시조치를 규정할 뿐, 해당 정보와 유사한 정보에 대한 일괄적 삭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사 정보의 유포를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제정안은 삭제 또는 차단된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확산콘텐츠를 일괄적으로 삭제하도록 하여 n차

가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함.

- 다만, 해당 규정은 이미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중복 입법으로서 실익이 없거나,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려워서 강제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삭제 또는 차단된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과 동일한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이미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율하고 있음.
- 삭제 또는 차단된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과 유사한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서 의무로 부과하고 있음⁷⁾.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유사한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 조치로 원본 영상물을 일부 위·변조한 영상물(좌우반

7)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②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
2.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물등의 제목·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식별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비교·식별해야 한다.

가.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

4.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
-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 영상 일부 잘라내기, 흑백 전환과 워터마크 추가 등)에 대한 필터링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함.

- 또한, 확산 콘텐츠의 개념상 최초 게재 정보뿐 아니라 재게시·반복게시·미러링·편집 또는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확산되는 일체의 정보인데 그러한 정보 전체에 대한 일괄 삭제가 가능한 것인지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플랫폼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될 수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비교·식별(해시값 비교) 및 게재제한 조치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별도 제정안을 통해 유사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국민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정법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본 법률안의 입법 목적에서 언급한 것과 달리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수범대상으로 하고 있는 불법촬영물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일반적인 임시조치 제도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체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등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의무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 조치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라. 신고 절차 표준화 및 신고센터 등(안 제8조)

(1) 제정안 요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8조제2항).
- 플랫폼사업자는 신고 절차를 표준화하여 서비스 화면에 상시 게시하여야 하고 피해신고센터의 정당한 협조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
- 일정 규모 이상의 국외 플랫폼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의무를 부과하고, 국내대리인은 해당 플랫폼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2) 제정안 조문

제8조(신고 절차의 표준화 및 신고센터) ① 플랫폼사업자는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 절차를 표준화하여 마련하고, 이용자가 쉽게 인지·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접수·지원하는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플랫폼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플랫폼사업자는 피해신고센터의 정당한 협조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외 플랫폼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

의 의무 및 제5조·제6조에 따른 삭제·차단 의무를 성실히 이해하기 위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국내대리인은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해당 플랫폼사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검토사항

-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 절차의 표준화와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화면 상시 게시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의무를 규율하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안 제8조제2항은 피해신고센터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으로 인한 피해 접수·지원 업무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 상담 인력 및 역량이 요구되는 것으로, 현재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⁸⁾.

8)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운영) ① 국가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둔다.

②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긴급상담과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2.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 및 긴급상담과 불법촬영물등 신상정보 삭제지원부터 각종 연구·교육까지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업무를 이미 전문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으므로 제정안에서 신설하는 피해신고센터 설치·운영은 신고 창구 이원화 및 중복으로 인한 피해자의 혼란 야기 및 피해자 지원 체계의 분산을 야기할 것으로 보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국내대리인의 지정 의무는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8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8조제4항 또한 국외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입법으로 보임.
- 다만, 안 제8조제5항은 국내대리인의 플랫폼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한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한 연대책임을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지 않은 점, 국내대리인은 주로 자료 제출 및 감독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국내대리인은 통상 플랫폼사업자의 내부정보에 접근하거나 운영·관

-
- 3.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 4.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 5. 불법촬영물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6. 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 ③ 시·도지사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
 -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
 - 2.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 3.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
 -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리를 할 권한이 없고 국외사업자를 대신한 자료제출 업무 또는 이용자 불편 창구의 기능을 수행할 뿐인데, 사업자 위법행위 전반에 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책임과 권한 사이 불균형을 초래하며 비례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별도의 피해신고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신고 창구의 이원화 및 중복으로 피해자 지원 강화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국민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정법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마. 벌칙 및 과징금(안 제10조)

(1) 제정안 요지

- 플랫폼사업자 및 국내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삭제·차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 전년도 국내 매출액의 100분의 1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플랫폼사업자 및 국내대리인이 고의·중과실로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삭제 의무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제정안 조문

제10조(벌칙 및 과징금) ① 플랫폼사업자(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삭제·차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국내 매출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플랫폼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미성년 피해자에 관한 제6조의 삭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제정안은 플랫폼사업자, 특히 국외 사업자에 대하여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에 대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벌칙과 과징금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안 제10조에 벌칙 및 과징금을 함께 규정하는 것 보다는 별도의 규정으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과징금, 과태료, 벌칙 규정을 각각 별개의 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에서도 과태료, 벌칙 규정 별도의 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정안은 단순히 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국내 매출액의 100분의1 이내의 과징금으로 액수를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 뿐 아니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과징금을 두고 있는 대부분의 입법례⁹⁾를 살펴볼 때에 단순히 ‘전년도 매출액’으로 규정하기 보다 구체적인 매출액 산정 방식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입법례를 고려한 수정이 필요해 보임.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그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나아가,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벌칙 및 과징금 규정을 두는 것은 필요하나,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조치의무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삭제·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미이행 시 매출액의 100분의3 이하의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고¹⁰⁾, 동법 제95조의2는 유통방지 조치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이행 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제가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간 중복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국민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정법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플랫폼에게 단기간(24시간/48시간) 내에 비동의 성적 표현물 여부 판단 의무를 규정할 뿐 아니라 의무 위반시 매출액의 1%라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처벌까지 규정하여, 적법한 콘텐츠의 유통도 사전에 차단되는 ‘과잉 삭제

10)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치의무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조치의무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 독촉·징수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over-blocking)’를 낳게 되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28